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 (3)

자료제공 / 조달청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칙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Q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 내용이 반영된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에 기존 공사공정예정표는?

A

-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은 공사 착공 시 제출한 공사공정 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한 물량을 기준으로 산출함
- ②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았고, 단지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 승인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일어난 경우라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함

! 관련 규정 : ◇회제 41301-648, '03. 05. 26

Q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실제공정과 공사공정예정표상의 공정이 상이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기준은?

A

-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산

정하며

- ②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사공정 예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함
- ③ 단, 지연된 내용이 정부책임이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공사공정 예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포함하여 적용

※ 불가항력 사유 정의(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태풍, 호우,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서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관련 규정 : ◇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 회제 41301-946, '03. 08. 21

Q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이나,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조정기준일 현재까지 예정공정표를 변경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비목군 분류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산출방법? 계약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지수조정률 산정 시 비목군 분류의 적용방법?

A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금액이며

- ② 공사이행이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지연 등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동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함
- ③ 지수조정률에 의한 경우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 등 순공사 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일반관리비, 이윤은 제외함

! 관련 규정 : ◇ 회제 41301-372, '03. 04. 03

Q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총공사 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각 차수별 공정예정표의 공정율을 합한 공정율이 서로 다를 경우 어떤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A

- ①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공사착공 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현재의 산출내역서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물량으로 산출
- ②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 공정예정표의 공정율로 차수별 공사 공정예정표의 공정율을 합한 공정율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공사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차수별 공사공정표 작성
총공사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각 차수공사별로 공사 진행 현황, 예산배정 등을 감안하여 올바르게 작성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 질의 및 회신-11636, '04. 11. 08

Q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 공사의 차이로 인한 물가변동 예정 공정율 적용 시 차이점

A

①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 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차수별 공사 공정예정표의 공정율을 합한 공정율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공사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차수별 공사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을 감안하여 공사진행 현황, 예산배정, 어느 공사공정 예정표가 바른지 등을 검토하여 올바르게 바로잡은 총공사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② 적용방법

- 계속비공사는 전체공사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율을 산정
- 장기계속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차수별로 예정공정표가 분리된 경우에는 차수별 예정공정표를 참조하여 산출
 - 차수공정예정표 적용 시 감독관 승인 필요
 - 전체공정예정표와 차수공사공정예정표 확인 필요

※ 사유

→ 현재 대단위사업들의 공정표 작성 시 일부현장의 경우 차수공사 공정예정표를 수정하면서 전체공사 공정예정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관련 규정 : ◇회제 41301-766, '98. 04. 28
 ◇질의 및 회신-11636, '04. 11. 06(법무심사팀)

Q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공제 기준은?

A

- 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공제여부
 -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수령)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수령)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② 준공대가 공제여부
 -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관련 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22조

Q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 PS단가 적용 기준은?

A

① PS항목과 같이 시공당시에 설계내용이나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항목의 계약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 PS항목에 대하여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음

PS항목(잠정금액) : Provisional Sum
 설계당시 설계내용 및 계약내용을 확정하지 못하여 1식 단가로 금액을 산정한 경우

② PS 대상 항목은 설계서 및 수요기관에 PS 여부를 확인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당시의 PS금액이 제잡비 항목인지, 제잡비 제외항목인지를 파악하여 물가변동 조정 시에 PS금액은 제잡비 적용여부를 파악하여 적용한다.

- 국토해양부 : PS금액 제잡비 적용하여 산출
- 도로공사 : PS금액 제잡비 제외항목으로 산출

※ 감사원 지적사항
PS 항목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도록 지시

Q 턴키 입찰공사에 포함된 설계비 항목은 물가변동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여부

A ①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중 설계부분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전에 그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설계비는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어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서 제외함

※ 공사시행 전 완료된 설계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설계는 이행완료된 것으로 보아 적용대가에서 제외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일괄 입찰의 낙찰자 선정)의 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위 조항에 해당하는 공사일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 전부 또는 일부의 설계비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회계제도과-401, '05. 03. 02

Q 계약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선급공제 시에 선급금률 적용 방법은?

A ① 선급 공제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한다.
※ 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률 × 선급금률

산식 : 선급금률 = 선급 ÷ 당해연도 계약금액(년부액)

※ 당해연도 계약금액 정의

▶ 계속비공사 : 당해연도 이행금액(년부액) 기준

▶ 장기계속공사 : 당해연도 차수계약금액 기준

②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차수 적용대와 선급금율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예시) 선급 공제금액 산출

구분	당초	변경 (조정기준일)
계약금액	100억원	120억원
선급금율	30%	25%
선급금액	30억원	30억원
※ 선급 공제금액 = (120억원에 대한 적용대가) × 25% × K(물가변동률)		